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8일, 오기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2025. 11. 1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원회(2025. 11. 3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의결(수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오기형의원)

이 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채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채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개정안의 시행일이 도과됨에 따라 법률의 소급적용을 방지하기 위

해 시행일을 ‘2026년 2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의 시행일이 도과됨에 따라 법률의 소급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6년 2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시행일을 ‘2026년 2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26년 2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법은 <u>2026년 2월 1일</u> 부터 시	----- <u>공포한 날</u> -----
행한다.	-----.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8호 중 “채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채납자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7. (생 략) 18. <u>채납자의</u> 생계 유지에 필요 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압류금지 재산) ----- -----. 1. ~ 17. (현행과 같음)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u>예금 등 채납자의</u> ----- ----- -----